

의 안 발 의 서

의 번	안 호	2015 -
--------	--------	--------

수 신 : 거창군의회 의장

2015. 8. .

제 목 :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지원 조례안 제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 임 :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지원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 권재경 의원

(형남현, 최광열, 박희순, 강철우, 변상원 의원)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66
----------	-----------

발의일자	2015. 7. 31.
발 의 자	권재경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 군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존·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

2. 주요내용

- 가. 향토문화유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 (안 제2조)
-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다.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라. 기록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문화재보호 조례」
- 나. 예산조치 : 2016년 당초예산 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8. 17. ~ 8. 2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적”이란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나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후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조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토문화유적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향토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수비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적 1개소당 보수비 지원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2. 보조율 : 군비 70퍼센트 이내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향토문화유적을 선정할 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郡史) 및 군내 지역문화유산 관련 책자 수록 여부
2. 향토문화유적의 건립시기, 관리상태, 보수의 긴급성
3. 보수비 산출의 적정성 등

②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향토문화유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방치할 경우 추가 훼손이 우려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보존관리) ①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적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작성·보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 사업을 시행한 향토문화유적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사람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경상남도지정문화재(이하 “도 지정문화재”라 한다)란 도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1.25, 2003.04.24, 2009.05.14>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11.08.18>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개정 2003.04.24>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03.04.24>

나. 경승지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03.04.24>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지형·지질·광물·동굴·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03.04.24> <개정 2011.08.18>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그 밖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1993.11.25, 2009.5.14, 2011.8.18, 2014.10.10>

② 이 조례에서 “문화재자료”란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5.14>

③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3.04.24> <개정 2009.05.14>

④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

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신설 2011.08.18>

- ⑤ 이 조례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